
자영업자 · 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

2022. 8.

금 융 위 원 회

||| 목 차 |||

I . 추진 배경	1
II . 추진 내용	2
가. 지원대상 차주	2
나. 대환대상 채무	3
다. 대환대상 금융기관	4
라. 대환 취급기관	4
마. 대환 프로그램 내용	5
III . 신청 · 처리 절차	6
IV . 향후 추진계획	7

I

추진 배경

□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만기연장·상환유예, 신규자금 공급 등 다각적 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·소상공인 대출 증가*

* 자영업자 사업자대출 잔액(조원, NICE) : ('19말)456.6 ('22.6말)653.4 (증가율 +43.1%)
(동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+15.6%)

○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

○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출 상환능력은 저하*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증가 등 대출의 질이 악화**

* ①3개 기관 이상 대출 보유 개인사업자(만명, NICE) : ('19말)7.5 ('22.6말)33.2 [4.4배]
②자영업자 대출 성격(한은) : 변동금리 비중 70.2% 일사상환 비중 45.6% 만기 1년 내 69.8%

□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주요국에서 통화긴축을 가속화하면서 금리 부담이 가중*되는 상황

* 기준금리(%) : [韓] ('20.4월) 0.25 → ('22.7월) 2.25 / [美^{상단}] ('20.4월) 0.5 → ('22.7월) 2.5

○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고금리를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에는 부담

⇒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

◆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**8.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**을 도입*

* 국정과제 I-1 “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” 및 '22.7.14일 대통령 주재 “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” 후속조치

○ 저금리 대출 및 장기 분할상환을 통해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영위 지원

II

세부 내용

가

지원대상 차주

◆ ① **코로나19 피해를 입은** ② **정상차주에 해당하는** ③ **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** * ①·②·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

1. 코로나19 피해

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차주

①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* 또는 손실보상금** 수령 차주

- * 일회성 지급(2차 새희망자금, 3차 버팀목자금,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, 5차 희망회복자금, 6~7차 방역지원금, 8차 손실보전금)
- **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상시 제도(소상공인법§12의2)

② '22.6월말 이전 쉼 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

코로나19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, 도박·사행성, 등의 업종*은 지원대상 제외(여타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)

- * 세부사항은 [별첨] '대환 프로그램 제외 업종' 참조

2. 정상차주

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

휴·폐업, 세금 체납,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

-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“새출발기금”을 통해 지원할 예정

3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

(개인사업자)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
(법인 소기업)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(숙박·음식·교육 등)~120억원(제조업 등) 미만인 법인

- ※ 소상공인은 개인·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서 포함

나 | 대환대상 채무

◆ ① 신청시점 금리 7% 이상 은행·비은행권 ② 사업자 대출

◆ ③ '22.5.31일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신청 가능

1] 금리 7% 이상 은행·비은행권 대출

-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금리 7% 이상 대출(약 22조원)*의 약 40%**인 8.5조원 규모로 대환보증 공급

*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금리 7% 이상 신용·담보대출 잔액('22.2말) : 총 21.9조원(48.8만건) / 비은행 17.6조원(41.2만건), 은행 4.3조원(7.7만건)

**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수 대비 손실보전금 수급자 비중 고려

-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“대환 신청시점”에 적용되는 금리가 7%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

2] 사업자 대출

-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·운전자금 등 기업여신

- ①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, ②대출 특성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*

* (예)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,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, 스타트업, 마이너스 통장 - 화물차·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(할부 포함)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사업목적 대출이 명확한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

3] '22.5.31일까지 취급한 대출

-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사업취지 등을 고려하여 '22.5월말까지 취급된 대출*까지 지원할 예정

* '22.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'22.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 ('22.6월 이후 순수 신규대출은 지원대상 제외)

다 | 대환대상 금융기관

◆ 은행 및 저축은행, 여전사, 상호금융, 보험사

□ 기존 대출 보유기관은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상호금융*, 보험사

* 신협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

-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

라 | 대환 취급기관

◆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

□ 원칙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①비은행 ⇒ 은행 대환 중심으로 운영

- 자영업자의 선택권, 기존 대출기관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②은행 간 대환, ③기존 대출기관(은행·비은행) 자체 대환도 가능

< 지원대상별 대환 취급방식 >

지원대상 취급방식	비은행 고금리대출	은행 고금리대출
타행대환	▶ (A비은행 ⇒ B은행) 취급 ▶ (A비은행 ⇒ C비은행) 미취급*	▶ (A은행 ⇒ B은행) 취급 ▶ (A은행 ⇒ B비은행) 미취급**
자행대환	▶ (A비은행 ⇒ A비은행) 취급***	▶ (A은행 ⇒ A은행) 취급

* 그간 비은행권은 신보 보증 未취급 ⇒ 조기정착을 위해 시스템 부담 최소화 등 감안

** 소상공인의 은행 선호수요 등 감안

*** 다만, 실제 비은행 대출기관의 취급여부는 개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※ 신보 보증을 취급 중인 14개 은행*은 대환 프로그램 참여 확정

*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수협, SC, 부산, 경남, 대구, 광주, 전북, 제주

- 그간 신보 보증을 취급하지 않았던 금융기관(인터넷전문은행, 비은행)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중 확정 예정

마 | 대환 프로그램 내용

◇ 8.5조원 규모로 최대 6.5%대(은행권 기준) 보증부 대출로 전환

- (대환규모) 8.5조원 (사업자 대출)
- (상환구조) 5년 만기 /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
- (금리) 기간별 상한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에 따라 결정
 - (1~2년차) 최대 은행 5.5% ⇒ 2년간 고정금리
 - (3~5년차) 은행채 1년물(AAA)* + 2.0%p 이내
- * '22.8.9일 기준 은행채 1년물(AAA) 평균 금리 : 3.428%
- (차주당 한도*) 개인 5천만원, 법인 1억원
 - * 은행 고금리 차주까지 지원대상에 포함('22.5말 추경)된 만큼 다중채무자 등의 실효성 있는 금융부담 절감을 위해 한도상향(당초 발표액 : 3천만원)
- (보증료율) 연 1% 고정
- (보증비율) 90%(자행, 타행대환 공통)
- (보증공급 방식) 금융기관(은행·비은행) 위탁보증
- (재원) 정부출연 6,800억원('22.5월 추경)

※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원활한 회복 지원을 위해 현재 금융권은 기존 고금리 대출과 신규 대환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

Ⅲ

신청 · 처리절차

◆ 신보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(생략 可) ⇒ 은행 등에서 저금리 대환 신청(비대면 및 대면 모두 가능)

- 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환대출 확인 및 상환처리 진행

가

확인 · 신청

□ 자영업자·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, 오프라인 창구 등 통해 지원자격 여부, 대환대상 대출 현황 등을 확인

- 지원자격 여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거쳐 손쉽게 확인*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등 추진

* 정부, 유관기관, 금융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산적으로 연계하여 차주 개인정보 처리 동의시 일괄적으로 확인 처리

□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 앱(app),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

- 다만, 법인 소기업,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*에는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

* (예) 고령고객, 신청 금융기관 첫거래 고객, 비대면 접속환경 부재 등

※ 지원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·대면 모두 신청시점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(예 :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)

나

대환 처리방식

□ 영업점 직원이 직접 대환대상 확인·상환처리 등 수행*

* 대환대상 원금·이자 확인, 자금송금, 상대 금융기관 상환처리 여부 확인 등

IV

향후 추진계획

□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9월말 대환 프로그램 신청·접수 실시

○ (8~9월) 금융권 협약체결, 전산시스템 구축, 법령 개정 등

- (협약체결) 금융회사 간 대환대출 원리금 확인, 자금 송금, 대환확정 절차 등 협의를 거쳐 소 금융권 협약 마련·체결

- (전산시스템) 지원대상자, 대환대상 대출 확인 등을 위한 유관 기관 간 시스템 연계, 금융기관별 대환 접수 시스템 등 구축

- (제도 개선) 비은행권 대환보증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*

* '22.7월 신보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⇒ '22.9월 중 시행 예정

○ (9월말)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및 저금리 대환 실시

□ 대환 프로그램은 '23년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(중기부)과 동일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방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 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)은 신청가능 - 부동산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 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국세청은 보건업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 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서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무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